

# 〈濟州啓錄〉에 나타난 濟州漂到彼人の 實態

高昌錫\*

## 目次

- I. 序-資料와 價値
- II. 未辨船의 出沒報告와 對策
- III. 問情記의 분석

## I. 序 - 資料와 價値

〈濟州啓錄〉은 朝鮮朝 憲宗 12년(1846) 2월 26일부터 高宗 21년(1884) 11월 6일까지의 사이에 濟州牧에서 보고했던 啓文을 備邊司(1864 이후는 議政府)에서 謄錄한 冊이다. 奎章閣圖書 分類目錄에 의하면, 〈濟州啓錄〉은 5冊으로 이루어졌으며 圖書番號는 15099로 적혀 있다.

그러나 5冊의 內別番號는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 즉 각 책의 수록 연대를 연대순으로 정리해 보면, 憲宗 12년(1846) 2월 4일부터 哲宗 9년(1858) 10월 2일까지가 제5책으로 되어 있고, 高宗 3년(1866) 8월 14일부터 同王 9년(1872) 5월 26일까지는 제1책, 同王 18년(1881) 7월 9일부터 同王 20년(1883) 5월 29일까지는 제2책, 同王 20년 7월 22일부터 同王 20년 5월 1일까지는 제4책, 同王 20년 5월부터 同王 20년 10월까지의 제3책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哲宗 10년(1859)부터 高宗 2년(1865)까지 7년간, 同王 10년(1873)부터 同王 17년(1880)까지 8년간, 합하여 15년간의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 그런데 이 5冊의 筆寫本(42×30cm 大小不同)이 최근 國史編纂委員會에서 〈各司謄錄〉 전라도(II)

\* 제주대 사학과 교수

편으로 영인되어 나왔다.

그리고 연도별(혹은 연도의 중간) 卷頭書名이 '耽營啓錄', '耽營別啓錄', '濟州牧別啓錄'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狀啓를 올린 당시 제주목사나 혹은 備邊司의 謄錄者에 의해 달리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한다. 또 狀啓를 작성하여 上送한 日字 다음에 당시 제주 목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行牧使 蔡東健', '行牧使 任百能'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내용상 주류가 되고 있는 사항은 漂流島民에 대한 수색, 익사자에게 지급되는 元恤典의 수량과 還布蕩滅 등의 대책, 漂到·來泊船의 出沒에 대한 대책과 問情記, 다른 지역에 漂到했던 濟州島民의 생활과 표류경위, 제주 세 고을의 농사현황 및 橘果進上 등에 관한 것이다.

이외에도 祈雨祭 실시, 과거의 실시와 합격자 보고, 새로운 定式에 의한 軍制의 改編, 馬政, 守營에 대한 褒貶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다. 중요한 진상품목은 각종 橘果로서 三邑 과원의 金橘, 大橘, 山橘 등의 계수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軍器의 修善과 官廳의 改築에 따른 자세한 사항이 첩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狀啓는 王命을 받들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국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文書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 官編史料에 소개된 것이 있는가 하면 文集類등에 轉載된 것도 있다. 文集에서는 대개 狀啓를 書狀이라 하였다. 장계는 그 시대, 그 지방의 중요한 일에 대한 보고나 청원이므로 史料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은 말 할 것도 없다. 때문에 <濟州啓錄>은 朝鮮朝 末期의 제주의 사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本稿는 <濟州啓錄>의 내용 중, 未辨船의 제주도 표도, 내박에 대한 사실을 한 두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즉 未辨船의 出沒 보고와 그 대책에서는 出沒報告와 問情節次, 船制와 人形, 留住間 供饋와 越海糧饌, 來泊顛末, 問情記의 內容에서는 問情項目, 문정기의 활용방안, 분석결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른바 問情記는 다 아는 바와 같이 漂到船舶이 沿海浦邊에 정박했을 때 해당지역 守營(縣監, 뒤에 郡守)이 問情官이 되어 譯學, 通事 등을 대동하고 현장에 나아가 彼人(外國人)들로부터 來泊顛末을 상세히 묻고 그 답한 내용을 조목별로 적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정기는 해당 지역 守營과 譯學 또는

〈濟州啓錄〉에 나타난 濟州漂到彼人の 實態

通事가 각각 馳報 또는 手本の 형식으로 제주목사에게 보고하며, 목사는 이를 토대로 하여 備邊司(뒤에 議政府)에 狀啓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정기의 자료 항목(上部에의 보고일자)은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	報 告 日 時	報告官廳
1	道光 28년 (헌종 14, 1848) 8月 2日 酉時	備邊司
2	咸豐 元年 (철종 2, 1851) 3月 25日 申時	"
3	咸豐 2년 (철종 3, 1852) 12月 6日 未時	"
4	咸豐 3년 (철종 4, 1853) 8月 12日 午時	"
5	咸豐 8년 (철종 9, 1858) 8月 11日 卯時	"
6	同治 6년 (고종 4, 1867) 10月 21日	議政府
7	同治 6년 (고종 4, 1867) 10月 29日	"
8	同治 6년 (고종 4, 1867) 11月 15日	"
9	同治 10년 (고종 8, 1871) 4月 3日 未時	"
10	同治 11년 (고종 9, 1872) 5月 12日 申時	"
11	光緒 9년 (고종 19, 1882) 3月 21日 申時	"
12	光緒 9년 (고종 20, 1883) 10月 17日 辰時	"
13	光緒 10년 (고종 21, 1884) 2月 16日 辰時	"
14	光緒 10년 (고종 21, 1884) 5月 1日 午時	"

## II. 未辨船의 出沒報告와 對策

### 〈報告節次〉

未辨船(異樣船)이 제주 해역에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부터 沿海浦邊에 정박하기까지의 보고과정은 대개 세 차례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제1차는 煙臺와 烽燧臺에서 후망하던 別將이나 煙·烽軍-경우에 따라서는 정박한 인근 지역 마을의 里任이나 機察將 등이 각각 해당 지역의 守旣(縣監, 뒤에 郡守)이나 助防將·萬戶 등에게 "머칠 몇 시쯤에 未辨船 몇 척이 어느 방향에서 형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와서 알리면, 守旣이나 助防將·萬戶 등은 이 사실을 左右의 가까운 鎮에 傳通하여 각별히 망보도록 하는 한편, 제주목

<丑(1)>

일련 번호	進					告			報				漂 來泊地
	煙 峯 臺	職 別	姓 名	進 告 日 時	雙 數	方 向	所 屬	職 級	姓 名	馳 報 日 時	報 到		
1	水山煙 俠才煙	將 別	高漢 吳士得	4.25 申時	1	東大 南洋	旌水 山鎮	監防 助將	康金 慶榮	申時 戌時	方頭浦 1馬場		
2	牛頭煙 堂山煙	軍 煙	李雲 白尚連	3.24 未時	1	西大 北洋	大靜 西鎮	監防 助將	元錫 朴宗	未時 戌時	今勿浦 5		
3	西林煙 華惹煙	軍 煙	文長 沈明雲	2.1 辰時	1	西大 南洋	大靜 縣	監	尹 瓊	未時 未時	犯川浦 3		
4	寶杯煙 又美煙	將 別	高凡 吳如松	8.7 未時	1	東大 南洋	西靜 西鎮	助防 將	洪在 九	未時 戌時	新坪浦 3		
5	華惹煙 貯別煙	軍 煙	裴峯 宗祚彦	8.7 未時	3	東大 南洋	大靜 縣	監防 助將	金休 金世	未時 戌時	華惹浦 5		
6	貯別煙	軍 煙	康龍 信	10.17 辰時	1	西大 南洋	大靜 縣	守防 將	康康 祐致	未時 未時	華惹浦 3		
7	大靜煙	軍 煙	李漢 良	10.24 午時	1	西大 北洋	明月 鎮	萬戶	金祥 任	午時 申時	板浦 3		
8	山房煙	軍 煙	林宗 君	11.10 未時	1	西大 南洋	大靜 郡	守	康康 祐鎮	未時 戌時	沙溪浦 5		
9	頭毛煙	軍 煙	李忠 伯	4.16 未時	1	西大 南洋	明月 鎮	萬戶	康康 在五	未時 酉時	頭毛浦 3		
10	大浦煙	軍 煙	李明 祿	5.9 未時	1	南大 南洋	大靜 郡	守	金金 夢米	未時 戌時	穩達浦 3		
11	山房煙 和順里	軍 煙	金吉 國祿	3.18 ?	1	東大 南洋	大靜 縣	監	康康 在五	未時 戌時	和順浦 3		
12	又美里	機 察將	文汝 凡	10.15 ?	1	?	旌襄 縣	監	洪在 晉	未時	又美里 浦口		
13	西歸里	軍 煙	宋尚 文	2.10 ?	1	?	西靜 鎮	監防 將	韓萬 時	戌時	西歸里 浦口		
14	?	軍 煙	?	4.26 ?	1	?	水山 鎮	助防 將	洪淳 沂	未時	方頭浦		

〈濟州啓錄〉에 나타난 濟州漂到彼人の 實態

사에게 급히 書面으로 이 사실을 보고한다. 그리고 목사는 미변선이 오고 가는 자초지종을 주의하여 살펴서 낱말이 보고하도록 엄히 경계시켜 題送한다.

제2차는 수령이나 조방장·만호 등이 미변선이 어느 연해포변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서면으로 급히 보고하는 과정이며, 이 때에 목사는 각 연대와 봉수대에 특별히 경계시켜 망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뜻으로 措辭하여 題送한다. 그리고 제3차는 수령이나 조방장·만호 등이 사변에 대응키 위해 각기 소속 군병을 거느리고 현지로 달려가면서 목사에게 보고하는 절차인데, 이 때에는 未辨船이 정박한 浦邊과 육지와와의 거리, 그리고 船制와 人形 등의 내용이 역시 書面으로 보고 된다. 그 과정을 표로 만들어 보면 〈표1〉과 같다.

〈問情 過程〉

이에 목사는 異樣船의 犯境 사실에 놀랍고 염려됨을 나타내면서 부근의 哨軍(1哨는 약 100명)을 調發하여 연변을 把守하는 등의 절차를 더욱 더 엄중히 경계시키는 뜻을 특별히 戒飭하여 題送하는 한편, 해당 수령을 兼中軍으로 임명하고 譯學·通事 등을 즉시 내보내어 兼中軍과 함께 立會하여 問情한 뒤에 그 문정내용을 급히 보고하라고 시달린다.

이에 따라 兼中軍과 譯學·通事 등은 問情하기 위하여 현지로 떠난다는 보고를 목사에게 올리는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날이 어두워져서 船制·人形을 살필 수 없다든지 혹은 日氣가 不順하여 未辨船에 갈 수 없으므로 問情이 늦어진다는지 하는 보고를 다시 목사에게 올린다. 그러나 목사는 邊情의 시급함을 주지시켜 지체없이 신속히 문정하여 보고할 것을 독촉한다. 兼中軍, 譯學, 通事 등은 일기가 순조로워짐을 기다려 小船을 타고 未辨船에 가서 問情하거나 혹은 彼人 중 몇 사람을 대동하고 육지로 돌아와서 問情한 뒤, 그 결과를 問情別錄과 所持什物, 所持文書類(公文, 照票, 書信, 冊子 등)·船制·人形 등의 내용으로 서면 보고하는데 이때, “彼船이 所載한 卜物이나 그 동정을 차례로 살펴보니, 漂到되었음이 분명하다”는 내용을 첨부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목사는 彼人들이 이미 표도한데 대해 달리 염려할 만한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邊情을 중히 여기는 방도에 있어서는 1차 問情만으로 그칠 수 없으니 彼人들 중에서 문답할 만한 자 몇 사람을 守畵이 직접 선발하여 牧官으로 영솔해 오도록 兼中軍에게 傳令한다. 그러나 이때 彼人들 중에는 여러 날

을 표류하여 정신이 몽롱하니 조금 정신이 들 때를 기다려 용하겠다든 경우가 있는가 하면 去國萬里에 돌아갈 마음이 화살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즉시 떠나야 하니 잠시라도 서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고 또 州城은 정박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그 거리를 왕래하면서 여러 날을 소비하다 보면 바람부는 시기를 놓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목사가 직접 騰錄을 살펴보고, “彼船의 표도가 한 두번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전례에 의하면 1차 問情이 끝난 후 별다른 염려가 없을 때에는 바람이 부는대로 즉시 보내주었다고 하는 전례가 많으므로 彼人들의 원에 따라 바람을 기다려 발송시킨다”고 상부(비변사, 뒤에 의정부)에 보고한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는 당해 지역 수령이 彼人들 중 몇 사람을 목관으로 인솔해 오면 목사는 軍威를 크게 펼치고 그들을 庭下로 불러 들여 후하게 供饋한 다음, 반복하여 상세히 질문하는데 그들의 답하는 내용이 兼中軍의 당초 문정내용과 별 차이가 없으면 그들에게 귀국시기와 배의 짐기 중 손상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柴糧이 떨어지지 않았나 등의 내용을 묻고, 손상된 것이 있으면 고쳐주고 땀감과 식량이 모자란다고 하면 넉넉하게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兼中軍으로 하여금 다시 그들을 彼船으로 돌려 보내어 후풍하게 하고, 지방관에게 명하여 손상된 짐물의 보수와 머무는 기간 동안의 供饋, 越海糧饌 등을 전례에 따라 마련하여 지급케 한다.

### 〈船制·人形〉

問情記가 있는 事例를 중심으로 제주도에서 漂到·來泊했던 彼人들의 國籍을 살펴보면 주로 日本(유구인 포함)과 淸나라-프랑스인·아라사인이 동승한 것 포함이었으며, 그들이 타고 온 船制·人形은 다음과 같다. 日本人이 승선했던 船制의 경우, 대체로 “이물이 뾰족하고 고물이 넓으며 돛대 하나를 세웠다”(前尖後廣 插一帆竹)고 하였으며, 人形의 경우는 “머리에 자그마한 상투가 있고 검은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倭人과 같다”(頭有小髻 身被黑周衣似是倭人)고 하였다.

淸나라의 경우, 船制는 ‘前後平底’와 ‘前低後高’로 묘사되고 있는데, 공통점은 모두 “돛대 셋을 세웠는데 가운데 돛대가 가장 높다”(插三帆竹而中竹最高)고 한 점이다. 이외에도 “이물이 높고 고물이 낮으며 연기 통이 있어 火輪船

〈濟州啓錄〉에 나타난 濟州漂到彼人の 實態

같다”(前高後低有煙窟桶似是火輪船)고 한 내용도 있다. 그리고 人形은 ‘머리에 는 个穴羅를 썼는데’(頭着个穴羅), ‘위 아래의 服色은 혹은 푸르거나 혹은 붉은 며’(上下服色或青或紅), ‘몸에는 검은 두루마기를 걸쳤는데 淸人과 같다’(身被黑周衣似是淸人)고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編髮에 검은 옷을 입거나 禿髮에 氈衣를 입었는데 매우 冗雜하게 보인다’(編髮衣黑禿髮衣氈見甚冗雜)고 하였다. 한편 머무르는 동안의 공궤 내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즉, ‘매일 매 사람에게 양미 2되, 닭 2脚, 생선 한마리, 미역, 담배, 소금 장, 쌀감, 기름, 숯 등을 전례에 따라 마련하여 지급하고 나라에서 먼 지방사람들을 어루만지는 덕의를 보였다’(每日每名, 糧米二升鷄二脚生魚一尾甘藷南草鹽醬柴油(炭)等種, 依例磨鍊上下, 以示朝家柔遠之德意)고 하였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매사람에게 접두루마기 하나, 버선 한켠레씩을 營에 소재한 供彼遺穀중에서 삼베(布)로 바꾸어 만들어 주었다(衣服段每名接周衣一件, 襪子1件式 以其營所在供彼遺中換布造給)고도 하였다. 또 바다를 건널 때에 제공해 주는 양찬(越海糧饌)으로는 대체로 ‘배가 출범할 때를 기다려 때에 따라 넉넉히 획급한다(待其解纜臨時優厚劃給計料)고 하여 그 물종이나 액수는 알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糧米 40말, 닭 50마리, 미역 10속을 출급하였다(糧米四十斗, 生鷄五十首, 甘藷10束, 照數出給)고 한 내용도 보인다. 그리고 上部(備邊司나 議政府)에의 보고 사항은 ① 문정전말(別單), ② 公文模本(照票 書信 冊子 등 포함), ③ 선제도형 ④ 姓名列錄, ⑤ 卜物成冊 등이었다.

〈來泊顛末〉

事 例

① 그들은 일본국 平戶島 사람들로써 5명이 함께 작은 배 한 척에 타고 고래를 잡으려고 동월(4월) 22일 本島 生月浦에서 출항하여 바다에 나갔다가 갑자기 사나운 바람을 만나 동월(4월) 25일 이곳에 漂到하였다.

② 그들은 大法國西國(프랑스) 사람들로써 上海縣에서 公文을 받고 大清 사람들과 함께 배에 타고 바다에서 실종당한 사람을 찾다가 이곳에 도착하였다.

③ 그들은 大清國 江南省 蘇州府 通州 呂泗村 사람들로써 11명이 子花, 梧楸子, 西洋布, 燭心子, 兜肚, 煙桿, 木盆, 神籬 等の 物種을 孫同德의 商船에

실고 금년 11월 11일 通州 狼山港에서 출발하여 山東으로 가는 길에 15일 서북태풍을 만났는데 舵柄이 오래된 소치로 왔다갔다하며 헛되이 놀아 단단히 잡을 수가 없고 船上의 칸막이 중 4곳의 배의 공간이 저절로 점점 오그라들어 배를 제압할 수가 없어서 금월(12월) 1일 이곳에 표도하였다.

④ 그들은 日本國 薩摩島 사람들로서 23명이 함께 한 배에 타고 鹿兒島의 稅 白米 800석을 싣고 금년 7월 24일 그 섬에서 출발하여 山川浦로 가는 길에 同月 28일 갑자기 東大風을 만나 돛대가 부러지고 상하여 배를 제압할 수 없자 배안의 남은 돛대를 대신 세우고 배에 실었던 白米 및 納稅 公文을 船票와 함께 모두 바다에 내던지고 바다에서 떠돌다가 8월 7일 이곳에 표도하였다.

⑤ 舵工 鹽田市兵衛의 뱃사람 24명 및 入來利平次의 뱃사람 26명은 모두 日本國 薩州城下 上町村 사람들로서 白鹽·木綿 등을 배에 싣고 금년 5월 7일 上町浦에서 출발하여 琉球國 德之島에 가서 砂糖을 교환하고 8월 3일 그 곳 항구에서 출항하여 本國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사나운 바람을 만나 同月 7일 이곳에 표도하였다고 하며, 別府藤太郎의 뱃사람 27명은 일본국 薩州 鹿兒島 사람들로서 白鹽 茶葉 등을 싣고 금년 5월 18일 녹아도항을 출발하여 琉球國 德之島에 가서 砂糖을 교환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유구국 那霸村 상인 豊朝保 등 17명을 함께 태우고 그곳 항구에서 鹽田市兵衛 및 入來利平次の 배와 함께 동시에 출항하였는데 바다 중간에서 바람을 만나 이곳에 표도하였다.

⑥ 그들은 대청국 山東 登州府 黃縣 사람들로서 24명이 함께 한 배에 타고 금년 7월 25일 黃縣 龍口港을 떠나 同月 28일 利津縣 永和店에 도착하여 烏糞를 싣고 8월 12일 江南 상해현 吳淞港에 도착하여 銀錢을 교환하고 9월 16일 출발하여 還家하는 길에 22일 갑자기 바다에서 강도를 만나 소재한 은전과 衣裳 등물을 수량대로 다 강탈당하고 바다에 떠서 밤을 지새우는데, 익일 서북풍이 갑자기 급히 불어 선척히 조류를 따라 흐르다가 금월 17일 이곳에 표도하였다.

⑦ 그들은 대청국 강남성 소주부 상해현 사람들로서 25명이 함께 顯同盛의 배에 타고 금년 4월 28일 상해현 吳淞港에서 출항한 후 南通州에 이르러 木綿, 絳花를 싣고 9월 28일에 또 廣東 牛店에 도착하여 黃荳를 교환하고 10월 7일 출항하여 돌아오는 길에 12일 갑자기 서북태풍을 만나 於焉之間에 키가



〈濟州啓錄〉에 나타난 濟州漂到彼人の 實態

부러지자 배를 제압할 수 없어서 24일 이곳에 표도하였다.

⑧ 그들은 大清國 江南省 蘇州府 南通州 사람들로서 금년 10월 18일 상해현 吳淞港에서 출발하여 崇明縣 茶山港에 도착하여 바람을 기다렸다가 同月 28일 山東으로 향해 가는데 갑자기 서북대풍을 만나 조류를 따라 흐르다가 금월 10일 이곳에 도착하였다.

⑨ 그들은 일본국 薩州 鹿兒島 사람들로서 10명이 한 배에 같이 타고 지난 해 10월 19일 七島에서 출항하여 薩州로 향해 가던 길에 갑자기 동남대풍을 만나 同月 26일 이곳에 표도하였다.

⑩ 그들은 일본국 薩州 녹아도 사람들로서 8명이 한 배를 함께 타고서 永郎 部島民의 세금인 黑砂糖을 싣고 금년 4월 25일 그 섬을 떠나 大島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사나운 바람을 만나 돛대가 위기에 처하여 부러져 나가고 키가 빠져 나가 물결따라 흐르다가 금월 9일 이곳에 도착하였다.

⑪ 그들은 대청국 浙江省 寧波府 鄞縣 사람들로서 24명이 俄羅沙國 사람 26명과 함께 한 배에 타고 금년 정월 14일 天津浦에서 출항하여 일본국 長崎島에 가서 煤炭을 사고 3월 16일 천진으로 돌아갈 때에 갑자기 서북 악풍을 만나 18일을 표류하다가 겨우 이곳에 도착하였다.

⑫ 일본국 長門州 阿武郡 鶴江村 사람들로서 5명이 고기를 낚으려고 함께 자그마한 배 한 척에 타고 금년 9월 21일 本村 浦口에서 출항하여 여러 날 고기를 낚는 중에 금월 8일 갑자기 동대풍을 만나 배를 제압하지 못하고 조류따라 흐르다가 15일 귀국 지경에 도착하였다.

⑬ 일본국 대마도 嚴原村 사람 5명이 行商次 함께 배 한척에 타고 白鹽, 甘齋酒를 싣고 금년 2월 초2일 本浦 終南浦口에서 출발하여 貴國 釜山港으로 가는 길에 초8일 동북대풍을 만나 배를 제압할 수 없어 초10일 이곳에 漂到하였다.

⑭ 일본국 대마도 山口縣 久賀村 사람 5명이 釣魚次 함께 배 한척에 타고 5월 초10일 本村 浦口에서 출발하여 18일 朝鮮國 三島 앞바다에 이르러 고기를 낚다가 25일 本國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동북풍을 만나 26일 이곳에 표도하였다.

### Ⅲ. 問情記의 분석

#### 〈問情 項目〉

問情記는 표도 및 어떠한 사유로 외국의 선박이 왔을 때 관리를 보내어 그 사정을 조사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때 선박이 정박한 지역의 수령이 대부분 問情官으로 差定되는데, 차정된 문정관은 譯官을 대동하여 해당 선박이 정박한 곳으로 가서 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牧民心書〉 奉公六條, 往役條에 의하면, 문정관은 외국인과 말을 할 때 동정하는 눈빛을 보여야 하며, 음식물 등 필요한 물건은 신선하고 깨끗한 것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래야만 그들이 감복하여 기뻐하고, 돌아가서도 좋은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정관의 임무는 선박의 來舶 사정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 외에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하였다. 그것은 만에 하나 우리의 선박이 그들 지역에 표류되었을 때 받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제주도민이 일본이나 유구국 등에 표류되었을 때 제주도민임을 숨겨야만 하는 것이 관례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 한 예로 〈제주계록〉 道光 27년 3월 11일 조에 “제주인이 異國에 표류했을 때 제주인이라 칭하는 것을 꺼린다”(“濟州人之漂入異國也 諱稱濟州之例”)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광해군 당시 유구왕자가 제주에 표도해 오자 관리들이 자신의 사욕을 위해 재물을 빼앗고 유구왕자를 죽여버린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문정관은 최대한의 후의를 漂到人들에게 나타내어야 했다.

問情의 기본적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국적 및 지방명
- ② 출발목적, 출발년월일, 출발지, 목적지
- ③ 출발에서 표도의 과정, 표도사유, 표류일수
- ④ 배의 파손과 뿔감 및 식량의 부족 여부
- ⑤ 배의 종류(官船 또는 私船인가?), 배의 모양
- ⑥ 출발지의 소관 행정단위 및 관원의 유무, 관원이 있을 경우 관원의 품직

〈濟州啓錄〉에 나타난 濟州漂到彼人の 實態

과 성명

- ⑦ 승선자의 명단 및 연령, 건강여부
- ⑧ 소지하고 있는 공문·조표·서신의 유무, 검토 결과 승선자의 명단과의 차이점
- ⑨ 선채된 물건의 양과 가격, 주인의 성격
- ⑩ 지역간의 水陸路, 귀국시 필요한 바람의 방향

〈活用 方案〉

이러한 질문을 통해 내박의 사정을 철저히 조사함은 물론 이에서 얻어진 내용은 그대로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에 충분히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문정을 통해 얻어낸 지식은 주로 어떻게 활용되었을까?

첫째, 국적 및 지방명, 소관 행정단위, 관원의 품직, 지역간의 수로와 육로의 거리 등은 도민들이 異國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둘째, 선박이 표도되어 올 때, 귀국시의 필요한 바람에 대한 지식은 우리 선박의 운항에 충분히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배의 모양 및 구조에 대한 자세한 인식은 배의 제작기술을 습득하는 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을 것이다.

넷째, 선채물의 명칭, 용도, 가격 등에 대한 관심은 이국의 상품을 아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문정기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를 작성하면 〈표(2)〉와 같다.

〈표 (2)〉

資料 問情項目	①	②
國籍名	日本國	大清國
地方名	平戶島	廣東 香山港
開船地	平戶島 生月浦	廣東 香山港口
出發日	1848년 4월 22일	1851년 3월 19일
出發目的	어업 (고래잡이)	실종자 수색
漂到까지의 과정 및 사유	4월 22일 출항하였다가 바람으로 인하여 표도	3월 19일 출항하여 동북방향으로 항해하다가 3월 24일 이곳에 도착
漂到日	1948년 4월 25일	1851년 3월 24일
漂到地	旌義縣 方頭浦	大靜縣 今勿浦邊
船의 종류	私船	官船
승선인원	5인	34인 (淸人 11, 프랑스인 23)
승선자의 건강	양호	양호
公文·照票 소지 여부	없음. 壽票소지	있음
귀국시 필요한 바람	서북풍	정동풍이 불면 서북쪽으로 向
소속지방의 행정	江戸 (東京) 에서 差出, 평호도 관장 1인	
里程	평호도~강호: 수로 350리 평호도~대판성: 수로 130리 평호도~生月浦: 旱路 3리	광둥~프랑스: 약 6만여리
船載物 및 가격 기타		柴糧. 빈배로 항해할 수 없어서 돌(石)을 선재했음.
		프랑스인이 함께 승선한 이유는 서로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

〈濟州啓錄〉에 나타난 濟州漂到彼人の 實態

資料 問情項目	③	④
國籍名	大清國	日本國
地方名	江南省 蘇州府 通州 呂泗村	살마도
開船地	上海縣 吳淞港	살마 녹아도
出發日	1852년 10월 22일	1853년 7월 24일
出發目的	商業	稅米운송
漂到까지의 과정 및 사유	서북대풍	동대풍
漂到日	1952년 12월 1일	1853년 8월 7일
漂到地	大靜縣 犯川浦邊	旌義縣 新坪浦邊
船의 종류	私船(孫同德의 배)	私船
승선인원	11인	23인
승선자의 건강	양호	양호
公文·照票 소지 여부	소지함	바람을 만났을 때 모두 바다에 던 져버림.
귀국시 필요한 바람	동남풍	서풍
소속지방의 행정	오송항: 상해현 소속으로 參將官 이 있음 남산항: 통주 소속으로 總兵官이 있음	살마소속
里程	통주 呂泗村~오송구: 수로360리 상해현 오송구~남산항: 수로 250리 통주~산동: 수로 1,500리 통주~공유현: 수로 900리	살마도~녹아도: 水路 60리 녹아도~산천포: 수륙로 각 50리 살마도: 대관: 수로 400리 살마도~산천포: 수륙로 각 20리 살마도~강호: 수로 500리
船載物 및 가격 기타	子花 245包, 梧楮子 8箱子, 西洋 布 4상자, 兜肚 1抱, 燭心子 2상자 木盆 1건, 神羅 1	白米(백미 1석은 15斗이며, 1斗의 가격은 1貫)

資料 問情項目	㉔-1	㉔-2
國籍名	日本國	日本國
地方名	薩州城下 상정촌	薩州城下 상정촌
開船地	상정포	상정포
出發日	1858년 5월 7일	1858년 5월 7일
出發目的	商業	상업
漂到까지의 과정 및 사유	토산물인 백염·목염을 싣고 덕지도에 가서 사탕과 바꾸고 8월 2日 출발하여 상정포로 돌아가던 중에 바람을 만나서 표도	좌동
漂到日	1958년 8월 7일	1858년 8월 7일
漂到地	大靜縣 포슬포 연변	大靜縣·모슬포연변
船의 종류	私船	私船
승선인원	24인	26인
승선자의 건강	양호	양호
公文·照票 소 지 여부	日本人은 공문·조표가 없음. 私 齣를 소지함.	조표 없음, 공문 있음
귀국시 필요한 바람	서복풍	서복풍
소속지방의 행 정		
里程	상정촌~유구: 수로 3,500리 살주~강호: 수로·육로 각 5,000리	
船載物 및 가격	白鹽 500丸, 木棉 300丸(백염 1丸 은 10斗, 목면 1丸은 40근, 백염 1斗의 가격 200文, 목면 1근의 가격 600文), 사탕 1,080통(1통 150근, 사탕 1근의 가격 400文, 선재물의 주인은 鹽田市兵衛	사탕 1,040통(매통무게 150근), 목면 249환, 백염 189환, 백염 목 면의 주인 入來利平次
기타		

〈濟州啓録〉에 나타난 濟州漂到彼人の 實態

資料 問情項目	⑤-3	⑥
國籍名	日本國	大清國
地方名	살주 녹아도	山東 登州府 黃縣
開船地	녹아도항	黃縣 龍口港
出發日	1858년 5월 18일	1867년 7월 5일
出發目的	商業	상업
漂到까지의 과정 및 사유		龍口港(7월5일)→利津縣 永和店 (7월28일 도착, 8월4일 출발)→ 상해현 梧淞港(8월12일 도착, 9월 16일 출발)→9월22일에 도적만남 →23일 서북대풍
漂到日	1958년 8월 7일	1867년 10월 17일
漂到地	大靜縣 모슬포 연변	大靜縣 모슬포연변
船의 종류	私船	私船
승선인원	44인(유구인 17)	24인
승선자의 건강	양호	張國興·張不欽 2명이 상처를 당 했고 그외는 양호
公文·照票 소지 여부	조표 없고 公文있음	공문과 조표 소지
귀국시 필요한 바람	서북풍	春2·3月 東風
소속지방의 행정		황현은 등주부의 속읍. 1知州(5品 官) 9縣官(7品官)
里程	녹아도~유구항: 수륙로 각 3,500리	등주부~황현: 한로 60리 황현~이진현·연화점: 한로 800 리, 수로 600리 황현~산둥: 수로 20多路 황현~오송항: 약 2천路 상해현~이진현·영화점: 수로 2,800리
船載物 및 가격	사탕 870통(물건의 주인: 豊助保 1/2, 別府藤太郎)	烏糞(1포=165근, 가격은 은전 8錢)
기타		도적과 배의 모습: 紅毛

資料 問情項目	㉠	㉡
國籍名	大清國	大清國
地方名	江南省 上海縣	江南省 蘇州 南通州
開船地	上海縣 吳淞港	梧淞港
出發地	1867년 4월 28일	1867년 10월 18일
出發目的	商業	상업
漂到까지의 과정 및 사유	오송항 출발(4월28일)→南通州→ 廣東牛店 도착(9월28일), 출발(10 월7일)→10월12일 서북대풍으로 표도	오송항 출발(10월18일)→崇明縣 茶山港에서 머물다가 10월28일 출 발→산둥으로 가던 도중 10월29일 서북대풍으로 표도
漂到日	1967년 10월 24일	1867년 11월 10일
漂到地	大靜縣 板浦 연변	大靜縣 사계포변
船의 종류	私船	私船(주인: 田福順)
승선인원	23인	18인
승선자의 건강	양호	양호
公文·照票 소지 여부	상해현에서 발급한 공문·조표 소지	상해현 발급의 공문·조표 소지
귀국시 필요한 바람	東風	동남풍
소속지방의 행정	소주부 상해현 巡撫大府 副 2品, 知州 4品, 按司使 正2품, 知縣 正 7品	소주부 남통주 소속, 소주현 3品 官 4員, 남통주 5品官 2員
里程	소주부~오소항: 한로 40리, 수로 30리 상해현~남통: 수로 160리 상해현~관동우점: 수로5~600리 상해현~황성: ?	남통주~오송항: 수로 500리 오소항~다산항: 수로 200리 남통주~황성: 수로 5,000리 남통주~소주부: 수로 700리 남통주~산둥: 수로 1,300리 한로는 3000리가 넘음
船載物 및 가격	木棉 100匹, 강화 8만여근, 황개, 荳油 4囊, 荳餅 20片, 1囊=350근 1근=4전8푼, 1片=50근, 1근= 3푼, 목면 1필의 가격 1냥78錢, 강화 1근의 가격 2전5푼, 황개 1斗 의 가격 4전2푼	篋竹 180근, 1근의 가격은 500文
기타		



〈濟州啓錄〉에 나타난 濟州漂到彼人の 實態

資料 問情項目	⑨	⑩
國籍名	日本國	日本國
地方名	살주 녹아도	살주 녹아도
開船地	녹아도	녹아도
出發日	1870년 10월 19일	1872년 1월 10일
出發目的	稅운반	稅운반
漂到까지의 과정 및 사유	녹아도 출발(1870. 10. 19)→七島에서 사탕을 싣고 1871년 3월 11일 살주로 가는 도중에 동남대풍으로 표도	녹아도 출발(1월10일)→永郎部島의 稅인 사탕을 싣고 4월 25일 출발 동남대풍으로 표도
漂到日	1971년 3월 26일	1872년 5월 9일
漂到地	大靜縣 頭毛浦邊	大靜縣 색달포변
船의 종류	官船	官船
승선인원	10인	8인
승선자의 건강	양호	양호
公文·照票 소 지 여부	본래 관선은 공문·조표가 없음	조표 없음, 공문 소지
귀국시 필요한 바람	?	서품
소속지방의 행정	녹아·칠도는 살주소속 官人: 面高興藏	녹아도·대도 각 관장 1인, 영랑부도는 대도 소속
里程	녹아도~칠도: 수로 200리 녹아도~살주: 수륙로 50리 칠도~살주: 수로 150리	녹아도~영랑부도: 수륙로 각 150리 영랑부도~대도: 수로 70리 대도~살주: 수로 180리 녹아도~살주: 한로 50리, 수로 100리 녹아도 대관성: ?
船載物 및 가격	수신요람 책3권, 사탕 869통 (1통은 140근)	흑사탕 839통이었으나 439통은 바람을 만나 바다에 던졌으므로 400통만 남음, 1통은 120근
기타		

資料 問情項目	①	②
國籍名	大清國	日本國
地方名	浙江省 영파부 영현	長門州 阿武郡 鶴江村
開船地	天浦	鶴江村 浦口
出發日	1882년 1월 14일	1883년 9월 21일
出發目的	상업	어업(고기잡이)
漂到까지의 과정 및 사유	天浦출발(1월14일)→일본장기현 에서 매탄을 사서 3월16일 천포로 돌아가다 3월 17일 대풍	10월8일 동대풍
漂到日	1882년 3월 18일	1883년 10월 15일
漂到地	大靜縣 和順浦邊	旌義縣 又美里포구
船의 종류	私船(아라사국 百擊夫의 상선)	私船(선주: 암기총차량)
승선인원	50인(아라사인 26)	5인
승선자의 건강	양호	양호
公文·照票 소지 여부	없음	漁作小船은 본래 없음
귀국시 필요한 바람	바람이 순하면 즉시	서북풍
소속지방의 행정	영현 鎮海官 1員 (5品) : 鍾英	長門州 관원 1명
里程	영현~천진포: 수로 600리, 한로 2,200리 천진포~황성: 수로 244리, 한로 200리 천진포~일본 장기현: ?	장문주~학강촌: 한로 15리 학강촌~대판성: ?
船載物 및 가격	매탄 3,800封(1봉은 2,000근), 매탄의 용도: 起火之需, 주인百 擊夫, 1,000근의 가격은 8分.	잡은 고기를 전부 바다에 던져 버 려서 없음
기타	俄羅沙人과 동승한 이유: 서로 교역하 기 때문	

〈濟州啓錄〉에 나타난 濟州漂到彼人の 實態

資料 問情項目	㉓	㉔
國籍名	日本國	日本國
地方名	대마도 巖原村一	대마도 山口縣 賀村
開船地	대마도 終南浦	賀村 浦口
出發日	1884년 2월 2일	1884년 5월 10일
出發目的	상업	어업(고기잡이)
漂到까지의 과정 및 사유	2월2일 출발→부산항으로 가는 중 에 2월 8일 동북대풍으로 표도	5월10일 출항→5월17일 조선국 三島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5월25일 귀국길에 동북풍으로 표 도
漂到日	1884년 2월 10일	1884년 5월 26일
漂到地	旌義縣 西蹄浦邊	旌義縣 方頭浦
船의 종류	私船(선주: 암기총태)	
승선인원	5인	5인
승선자의 건강	양호	양호
公文·照票 소지 여부	없음	
귀국시 필요한 바람	서남풍→부산행	
소속지방의 행정	대마도 上官 1명, 속관 10명 邑원 촌 관장 1인	
里程	대마도~임원촌: 수·한로 50리 임원촌~종남포: 한로 50리 임원촌~대판성: 수로 2,700리	
船載物 및 가격	백염 150俵(1俵는 8승, 값 60문) 감재술 4동아리(1동의 가격 5,000 문)	
기타		

〈分析 結果〉

〈표2〉를 통해 얻어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漂到해 온 선박은 모두 16척으로 淸의 선박이 6건에 6척, 일본 선박이 8건에 10척이다. 표도인은 모두 290명이며, 청의 선박에 청인 111명, 佛·俄人 49명, 합하여 160명, 일본 선박에 일본인 113명, 유구인 17명, 합하여 130명이다.

2) 제주도에 표도된 사유는 실종자 수색을 위한 청의 배를 제외하면 모두 大風에 의한 것이다. 청의 배는 서북대풍으로 인하여 10월에서 3월에 이르는 기간, 일본 배의 경우는 동대풍 및 동남대풍이 원인이 되어 2월에서 8월사이의 기간에 주로 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국시의 바람은 물론 표도 때와는 반대로 청의 선박은 동풍 및 동남풍, 일본 선박은 서풍과 서북풍이다.

3) 표도 선박이 정박한 곳은 청나라의 배가 대정현(군)내의 和順浦邊(犯川포변) 2척, 沙溪포변(今勿포변) 2척, 攀瑟浦 연변 1척, 板浦 연변 1척으로 모두 제주도의 서남지역에 해당된다. 반면에 일본 배는 정의현(군)내의 方頭浦(新陽里) 2척, 新坪포변 1척, 又美(위미)里 포구 1척, 서귀진 포구 1척, 대정현(군)내의 모슬포변 3척, 頭毛포변 1척, 穡達포변 1척으로 청나라 배처럼 일정 지역에 편중되지는 않으나 산남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당시의 바람과 더불어 바다의 조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4) 선박의 종류와 선재물의 관련을 보면 청나라의 경우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표도한 官船을 제외하면 모두 私船으로 상업을 목적으로 출항했었다. 이들 배에 실려 있던 물건의 종류로는 子花, 梧楸子, 西洋布, 兜肚, 燭心子, 烟桿, 神鑪, 烏糞, 목면, 강화, 황두, 荳油, 荳餅, 황죽, 煤炭 등이다. 특히 매탄은 불을 피는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일본의 장기현에서 무역으로 얻은 것이다.

일본의 선박은 官船 2척, 私船 8척으로 역시 私船이 많다. 官船 2척은 모두 稅로 받은 물품을 운반하는 배로 鹿兒島, 永郎部島의 특산물인 사탕을 운반하던 중이었다. 私船은 어업을 목적으로 출항한 배가 3척, 稅米 운반선이 1척, 상업을 위한 배가 4척이다. 특히 상업을 목적으로 출항했던 배를 보면 3척이 薩州 지방의 토산인 白鹽, 木棉을 갖고 유구국 덕지도에 들어가 사탕과 교환

〈濟州啓錄〉에 나타난 濟州漂到彼人の 實態

하여 오던 중이었으며, 1척은 백염, 甘齋酒를 싣고 부산항으로 가던 중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무역교류의 일단면을 엿볼 수 있다.